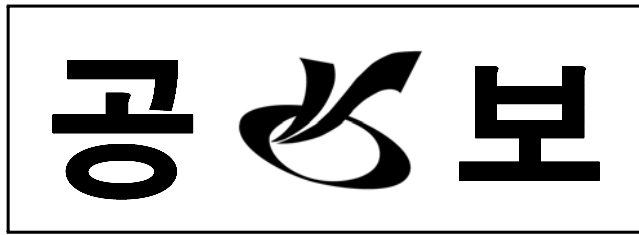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99호

2007년 9월 17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40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2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 3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40호

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- 아 래 -

대 상 시 설(지 역)			해 제 사 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	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시설(지역)명	소 재 지	소 유 자 (관리자)				
석남연립 다동	서구 석남1동 171-4	김충한 외 7인	보수공사 완료 (2007. 6. 5.)	C	특정관리대상시설 (C등급)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	위험요인 발견시 대책수립

2007년 9월 7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803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9월 14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****1. 개정취지**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설치토록 한 사회복지위원회가 특별시·광역시도에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(법률 6960호) 인천광역시 서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,
- 동 조례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와,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
-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,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,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93) 및 FAX(560-4979)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7.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③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4항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”로 한다.